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25개 자치구
총사업비	총 (국비) [시비] (보조율) [구비] 1,094,350천원 39,000천원 1,055,350천원 3.6 %
사업내용	○ 지하수 관리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발, 유지관리비 시비보조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V				V			V	
	V								
경상	투자								
	' '								
V									

□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

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결과
사업보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정
운영비보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Ŧ´ŏ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안대희 2133-3750	김일운 2133-3775	정영환 2133-3777

2 <u>예 산 설 명</u> □ 예산 총괄

□ 예산 총괄(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B)	증감 (B-A)	(B-A)*100/A
月	(x-)	(x-)	(x39,000)	(x39,000)	(x-)
	279,200	139,628	1,094,350	954,722	683
사무관리비	(x-) 4,000	(x-) 4,000	(x-) 4,000	(X-)	(X-)
자치단체경상보	(x-)	(x-)	(x-)	(x-)	(_X -)
조금	216,200	83,000	217,750	134,750	162
시설비	(X-)	(X-)	(x39,000) 834,300	(x39,000) 834,300	(X-)
자치단체자본보	(x-)	(x-)	(x-)	(x-)	(x-)
조	58,400	52,028	38,300	△13,728	△26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수당 4,000,000원	=	4,000천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	=	217,75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시설유지관리(매년실시):1,000천원*163개*50% 81,500,000원	=	81,500천원		
사시단세경경도소급	- 시설관청소(격년제 실시) : 2,500천원*109개소*50% 136,250,000원	=	136,250천원		
	○ 민방위용수 시설개발(68,900천원*10개소) 689,000,000원	=	689,000천원		
시설비	○ 유출지하수 민방위용수 개발(36,325천원*4개소) 145,300,000원	=	145,300천원		
	○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교체 등	=	38,300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발전기(13,000,000원*3개소*50%) 19,500,000원	=	19,500천원		
	- 제어반(2,600,000원*1개소*50%) 1,300,000원	=	1,300천원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 시설개보수(11,666천원*3개소*50%) 17,500,000원	=	17,500천원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지하수를 보존 관리하고, 가뭄, 전쟁 등 재난 대비 상수도에 대체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인구대비 민방위용수 확보율도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제15조. 지방재정법 제22조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지하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사업내용

- 지원시설 : 정부지원 및 자치구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수 관측 시스템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내용 :
 - 지하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연 6회 개최)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 자치단체경상보조금(217,750천원)
 - ▷ 유지관리비 및 관청소비용
 - 민방위용수 확충 : 14개소(종로구 외 10개 자치구)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교체 : 자치단체자본보조금(38,300천원)
 - ▷ 발전기교체 : 3개소 (동대문 1개소, 영등포 1개, 관악 1개소)
 - ▷ 제어반 교체 : 1개소(관악 1개소)
- '17년도 소요예산(안): 1,224,350천원(국비 39,000천원)

□ 추진경위

○ 지하수 보전 및 민방위용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매년 시행)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 비상급수시설은 인구대비 확보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비상시 활용토록 시설 확충을 하고자 함

□ 사업추진절차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조금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 보조금 신청(시←자치구) → 보조금교부(자치구←시) → 보조금 집행(자치구)→ 정산보고(자치구→시)

□ 2017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1,094,350	
기본계획 수립	2017.01		
지하수관런 자문회의 개최	2017.01~2017.12	4,000	필요시 자문회의
시설 발주 및 보조금 교부 등 예산집행	2017.02~2017.12	1,090,350	2월 자치구 교부 및 예산 재배정

4 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4년도	○ 비상급수시설 166개소 유지관리 ○ 비상급수시설 106개소 관정청소 ○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교체 등 ▷ 발전기 9대, 제어반 5대, 시설 재건축 1개소, 신규설치 1개소
2015년도	○ 비상급수시설 164개소 유지관리 ○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교체 등 ▷ 발전기 2대, 제어반 4대, 건축물신축 1개소, 건축물 개선 1개소
2016년도	○ 비상급수시설 161개소 유지관리 ○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교체 등 ▷ 발전기 3대, 제어반 3대, 건축물신축 3개소, 건축물 개선 1개소

□ 향후 기대효과

- 비상상태 발생 시 안정적인 비상용수 공급기능 유지
- 지하수위 관측설비 현대화로 지하수위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3	(x19,500) 327,937	(x-) 0	(x-)	(x19,500) 327,937	(x19,500) 327,350		(x-) 587
2014	(x-) 121,600	(x-) 0	(x-) 0	(x-) 121,600	(x-) 121,066	(_X -)	(x-) 534
2015	(x-) 279,200	(x-) 0	(x-)	(x-) 279,200	(x-) 278,708	(_X -)	(x-) 492